

「2024년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사업」 지원사업장 모집 변경공고

우리 협회는 환경부 「2024년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의 대행기관으로,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살생물제품 승인이행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승인자료 생산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대상

- 승인된 I 그룹 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서류를 '24년 10월 이내에 제출한 중소기업(협업체)
- 단, 승인신청서류 제출 후 접수번호 발급 전 접수반려된 제품 제외

지원 제한 요건

- 유사 지원사업에서 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을 통해 해당 살생물제품·제품유형으로 생산비용을 지원받은 제품(대표예시제품 포함)
 - ※ 단, 안전원 요구에 따라 추가 제출하는 장기보존시험에 한하여 기 지원받은 제품도 지원 신청 가능.
- 대·중견·외국계기업 및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지원 제외

□ 지원범위

- 국내·외 시험기관에서 실시하여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로 생산제출 완료된 성분분석 및 효과·효능 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
 - (성분분석) 제품별 안정성시험(장기보존, 가속저장, 저온안정성)을 포함하여 지원(1회)
 - (효과·효능) 제품별 모의사용 시험 조건하에서 (시험종)×(방제방법)에 따라 지원(1회)

※ 협의체에서 공동으로 생산하여 제출한 시험자료는 협의체별 지원하며, 안전원 요구에 따라 추가 제출하는 장기보존시험에 한하여 생산 중인 자료도 지원

□ **지원단가**(부가세 포함)

○ 성분분석 비용 지원

- 제품당 최대 12,000천원(안전원 요구에 따라 장기보존시험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하는 경우 최대 23,000천원)

(단위 : 천원)

시험항목	최대지원금	지원비율	비고
성분분석	12,000	소기업·소상공인 90% 중기업 70%	-
	23,000		안전원 요구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 대상

※ 기 지원받은 제품의 경우 최대지원금 내에서 지급된 지원금은 제외 후 지원

○ 효과·효능 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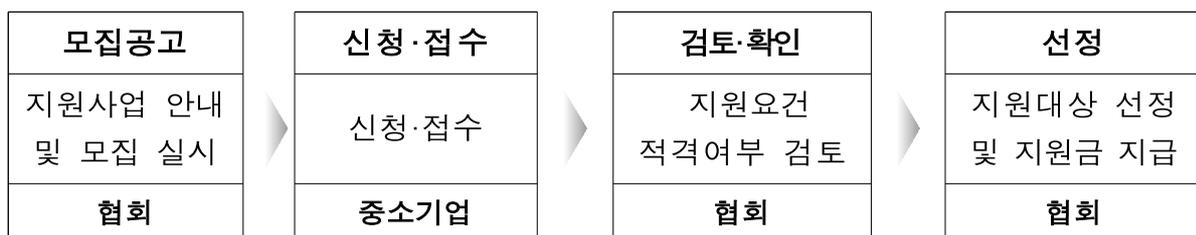
- 제품당 제품유형별 최대지원금 내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시험종당 최대지원금	최대지원금	지원비율	
			소상공인·소기업	중기업
살균제	-	15,000	생산비용의 최대 90%	생산비용의 최대 70%
살조제	-	11,000		
살서제	15,000	30,000		
살충제	10,000	50,000		
기피제	10,000	30,000		

※ 살균제, 살조제 효과·효능 시험자료는 시험대상 생물체 종·수에 무관하게 최대지원금 내 지원

□ **선정절차**



□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25.1.24(금)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E-mail 접수(kbpr@kcma.or.kr)

※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반드시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사업_기업명]으로 작성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지원 신청서	·[붙임 1] 참고
2	지원사업 참여 동의서	·[붙임 2] 참고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 3] 참고
4	사업자등록증	·정부기관 발급본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5	중소기업확인서	
6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7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 또는 승인신청 내역	·제품명, 제품유형, 살생물물질 등 확인이 가능한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 또는 승인신청 내역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확인가능
8	시험계약서	·신청기업의 소유권 증빙 필요
9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신청 후 수정사항 등 발생 시 최종본으로 재제출 ·안전원요구에 따른 추가 장기보존시험에 한하여 완료시 제출
10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영수)	·전자세금계산서(청구)제출 시 이체 영수증 첨부

※ 필요시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신청서류 이외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

※ 지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선정결과) 월별로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익월 중 개별안내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4월 선정결과는 4월 중 안내 예정

□ 유의사항

- 살생물제품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은 승인자료로 제출된 자료를 지원함
 - ※ 승인신청 자료로써 부적합한 자료는 지원 제외(ex. 효과·효능 승인기준 미달 등)
- 제출서류 미비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내 미보완시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되며 지원금은 환수되고 향후 협회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신청자는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 또는 승인신청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승인신청 내역과 함께 승인신청자료로 제출한 시험 최종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함
 - ※ 성분분석(안정성시험포함) 비용지원의 경우 ISO/IEC 17025 또는 GLP 등 신뢰성이 확보된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결과에 한하여 인정
- 안전원 요구에 따라 추가 생산된 장기보존시험자료를 승인신청자료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은 환수됨
- 시험기관 간 재위탁 시험자료는 선정 제외함
- 지원받은 시험자료의 소유권은 정부와 기업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정부와 공동소유하며, 기업은 저작권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시험계약서 및 협약서상 시험자료의 소유권자는 기업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정부의 동의없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함
 - ※ 저작권등록은 국문본을 기본으로 하며, 기타 언어로 번역 등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하여야 함
- 저작권등록이 완료된 시험자료의 기본정보 및 소유자 정보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공개될 수 있음
- 기업은 참조권 등 판매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기업분담 비용에 대해서만 판매가 가능하고, 정부의 확인을 받은 후 판매하여야 함

- 기업은 시험자료에 대한 사용 및 판매실적(판매금액, 구매자 정보 등)을 보고하여야 함
- 지원규모는 지원사업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제품관리팀)	02-3019-6747, 6781, 6784

- ※ 붙임 : 1. 참여 신청서
 2. 지원사업 참여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협의체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끝.